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-

제 안 설 명 서

2020. 1.



김귀화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김귀화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
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,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 나아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7조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다음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, 안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

-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0. 1. 13일부터 2020. 1. 23.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집행부는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
-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주민들이 좋은 질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며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인 바,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,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**
- **감사합니다.**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

(김귀화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0082001
------------	---------

발의일자: 2020. 1. 13.

발의자: 김귀화, 홍복조, 이영빈, 박종길, 이신자

1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6조)
- 다.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(안 제 7조)
- 라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, 실태조사 (안 제8조, 안 제9조)
- 마. 포상(안 제10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- 가. 사 유: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
- 나. 근 거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

5. 관계법령: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3. “사회복지기관”이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사회복지서비스”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, 재활, 직업 소개 및 지도,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구청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

다)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되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,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
2.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
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 설치)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
2.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
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 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인권 및 권리보호,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
2.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,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3.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·교육·훈련 사업
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(포상)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」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

【 관 련 법령 】

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제2조(정의) "사회복지사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(이하 "사회복지법인 등"이라 한다)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

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

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 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 - 나. 「아동복지법」
 - 다. 「노인복지법」
 -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
 - 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 - 바. 「영유아보육법」
 - 사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- 아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 - 자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- 차. 「입양특례법」
 - 카.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 - 타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
 - 파. 「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 - 하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- 거.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 - 너.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 - 더. 「의료급여법」
 - 러. 「기초연금법」
 - 머. 「긴급복지지원법」
 - 버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 - 서. 「장애인연금법」
 - 어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 - 저.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 - 처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 - 커. 「장애인활동 복지지원법」
 - 터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 - 페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 - 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
2. "지역사회복지"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.
 3. "사회복지법인"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4. "사회복지시설"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5. "사회복지관"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6. "사회복지서비스"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7. "보건의료서비스"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"대표협의체"라 한다)"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.
2. "실무협의체"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3. "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"동 단위 협의체"라 한다)"란 동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보장대상자 발굴·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대표협의체 기능) 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를 둔다.

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3.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4.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5. 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